

2025년도 장애인육상 농아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공고

대한장애인육상연맹에서는 2025년도 장애인육상 농아 국가대표 지도자를 공개 선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대한장애인육상연맹 회장

1. 선발개요

분야	채용형태	인원	비고
감독	계약직 (수당제)	1명	

2. 지원 자격요건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요건
1. 감독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7년 이상(코치의 경우 5년 이상)의 선수경력(대한체육회 선수경력 포함) 또는 5년 이상(코치의 경우 2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육상 국가대표선수 은퇴자로 패럴림픽대회(데플림픽 포함)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포함)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지도자로 선발된 후 2년 이내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위 기한 내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발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경력 및 증빙자료 필 제출반드시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정보시스템 지도자 등록을 완료한 자 (채용 후 2024년도 지도자 등록기간 내 등록 필)대한장애인체육회 신체검사 기준에 준하는 결과 이상이 없는 자국가대표선발규정 결격사유가(제10조 채용결격사유) 없는 자 (필히 숙지)

3. 채용조건

- (훈련기간) 미정(2025년 9월 ~ 11월_예정)
- (훈련장소)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및 촌외훈련
 - 훈련 일정 및 장소는 채용자에게 개별 공지 / 훈련기동안은 입촌
- (급여조건)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
- (계약기간) 훈련 시작일 ~ 대회 종료일(훈련 · 대회기간 중)
 - 계약시작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4. 전형 방법

- (제1차) 서류전형 / (제2차) 평가(면접)전형
 -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 함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 통지

5.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공고 원서접수	2024. 11. 27.(수) ~ 2024. 12. 8.(일)	18시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12. 9.(월) 예정	합격자 개별 통지
면 접	2024. 12. 중	합격자 개별 통지
최종 합격자 발표	결격사유 확인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최종 승인 후	개별 통지
근무시작	미정	개별 통지

- 일정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2차 면접을 실시 및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 채용)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진 부착)
-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및 결격사유 포함) 각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자격 등은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 활동계획서(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1부
-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급, 담당업무 기재) 1부
- 해당 자격증 사본 및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발급) 1부

7.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24년 11월 27일(수) ~ 2024년 12월 8일(일)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마감일 기준 18:00까지)
- (접수처) E-mail: kafdkorea@hanmail.net (제목: 농아 국가대표지도자 응시 **김육상**)
- (문의사항)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사무국 ☎ 02-455-4081

8.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 및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라도 지원서에 허위사실 기재, 허위 증빙서 제출 등 기타 채용이 부적합하고 판단되는 경우 및 채용이후 결격사유 발견 시에는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여부는 개별 통보
- 지원자 중 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채용하지 않고 재공고
- 불임문서에 의하지 않은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합격(별도 연락X)
- 전형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본 연맹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별도 통보 드립니다.

참고. 결격사유

국가대표선발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가. 폭력, 성희롱·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강간·강제추행 포함)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 수수), 횡령·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
 -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6.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가맹단체(시도지부 포함)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
9.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